

「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」
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「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」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유아 보육 및 가정양육 지원을 위하여 건립 중인 「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」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·운영을 통해 우수 보육 환경 제공과 영유아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·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(추진근거)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51조의2 제1항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○ (필요성)

-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보육 및 양육 관련 교육 및 상담, 보육컨설팅, 정보제공 등 전문성과 관련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, 민간위탁 추진으로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, 안정성을 확보

다. 위탁시설 개요

- 1) 시 설 명 :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
- 2) 위 치 :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2017(우항공원 내)
- 3) 시설규모
 - 대지면적 : 61,079.9m²(가용면적 1,953.60m²)
 - 연 면 적 : 1,674.57m²(지상3층)
- 4) 설 치 비 : 47.43억원(국10, 도3, 시16.43 채18)
- 5) 주요시설

층별	연면적	시 설 내 용
1층	880.79m ²	장난감도서관, 다목적교육실, 프로그램실(2), 시간제보육실
2층	533.85m ²	영·유아 체험놀이실, 수유실, 관리실
3층	259.93m ²	회의실, 사무실, 상담실

라. 위탁기간 : 2022년~2026년(5년)

* 기존 수탁자의 업무실적 평가 후 위원회 심의 거쳐 재위탁 가능

마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, 심의·선정

바. 위탁방법 : 위·수탁 협약 체결에 의함

사. 위탁 소요예산 : 연 812백만원 정도 (2022년 기준)

[단위 : 백만원]

계	인건비	물건비	자본지출	사업비
812	351	70	231	160

사진대지

□ 위치도



□ 조 감 도



재 산 현 황

구 분			건 물		토 지		비 고
			동 수	연면적 (㎡)	필 지	면적 (㎡)	
합 계			1	1,674.57	1	61,079.9 (가용면적 : 1,953.60)	
공 유 재 산	행 정 재 산	공용재산					
		공공용 재 산	1	1,674.57	1	61,079.9 (가용면적 : 1,953.60)	공원부지 내 건물
		기업용 재 산					
		보존용 재 산					
	일 반 재 산	행정재산 외 모든 공유재산					

위탁시설 현황

<건축물>

구분	연면적(㎡)	건축물 내역(면적㎡)
계	1,674.57	
지상1층	880.79	장난감도서관(110.11), 다목적교육실(77.18), 프로그램실1(45.21), 프로그램실2(44.80), 시간제보육실(35.26), 카페(21.99), 자료실(48.32), 기계실(60.05), 전기실(44.18), 물탱크실(47.60), 공용공간(346.09)
지상2층	533.85	유아체험놀이실(193.21), 영아체험놀이실(78.45) 수유실(9.45), 관리실(9.13), 공용공간(243.61)
지상3층	259.93	회의실(57.68), 사무실(64.39), 상담실(15.01), 공용공간(122.85)

관 계 법 령

□ 「영유아보육법」

제51조의2(업무의 위탁)

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19조 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

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

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□ 「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」

제12조(위탁운영)

-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·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업무실적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-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
-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한다.
 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 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 3. 경제적 효율성
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

소 관 부 서		아동보육과
입 안 자	과 장	권 혁 성
	담 당	이 정 화
	담 당 자	고 은 희 (480-6572)